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CG, ACG-RA, ACG-RB, ECJ-RA, IOB
 책임 사무실: Office of the Chief Operating Officer, Office of the Chief Academic Officer, Office of the Chief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학교에서의 서비스 동물 Service Animals in Schools

I. 목적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학생, 직원, MCPS 시설 방문자의 서비스 동물(Service Animals) 사용에 대한 절차를 합니다.

II. 배경

MCPS 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와 2008 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장애가 있는 개인이 시설, 학교 건물, 교실 또는 학교 행사에서 서비스 동물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III. 정의

A. 장애가 있는 개인(individual with a disability)이란 -

1. 주요 생활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2. 그러한 장애 기록이 있는 사람, 또는
3.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B. 서비스 동물(service animal)은 ADA 에 따라 정의된 모든 개 또는 특정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소형 말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동물이 제공하도록 훈련받은 업무나 업무는 그 사람의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함이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기능인 동물은 ADA에 따른 서비스 동물의 자격이 없습니다.¹

- C. *훈련 중인 서비스견(service dog in training)*은 현재 "서비스 동물"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나 서비스견으로 채용되도록 고안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는 개입니다. 훈련 중인 서비스견은 미래의 서비스견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개를 훈련하는 공인 기관의 소유되며, 해당 기관은 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나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IV. 행정절차

A.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에의 접근

장애가 있는 개인은 일반인, 학생, 교직원이 갈 수 있는 MCPS 건물의 모든 구역에서 장애인 서비스 동물과 동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 장애가 있는 개인이 장애인용 서비스 동물을 MCPS 소유지에 데리고 올 경우, MCPS 직원은 개인의 장애 성격이나 정도에 대해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동물이 장애인 서비스 동물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a) 장애로 인하여 동물이 필요한지
 - b) 동물이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일 또는 작업
2. MCPS 직원은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동물이 일 또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 받은 것이 쉽게 명백할 경우, 장애가 있는 개인이 서비스 동물을 MCPS 소유지에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a) *테라피견/치료견(Therapy dog)*은 연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ADA에 따라 공개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조련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치료적 접촉을 제공하며 서비스 동물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b) *테라피견/치료견(Therapy dog)*은 연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ADA에 따라 공개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조련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치료적 접촉을 제공하며 서비스 동물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c) *테라피견/치료견(Therapy dog)*은 연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ADA에 따라 공개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조련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치료적 접촉을 제공하며 서비스 동물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장애가 있는 개인은 해당 동물이 서비스 동물로 인증, 훈련 또는 승인, 훈련,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등의 문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B. 요건

1. 동물은 개 또는 특정 조건에서 소형/미니어처 말이어야 합니다.
2. 동물은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일이나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3. 서비스견은 취급자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동물은 취급자가 하네스, 마구, 리쉬/목줄 또는 기타 밧줄류/테더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해 서비스 동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업 또는 작업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네스, 마구, 리쉬/목줄 또는 기타 밧줄/테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동물은 취급자의 제어 하에 있어야 합니다. (예: 음성 제어, 신호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 반드시 하네스, 마구, 리쉬/목줄 또는 기타 밧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4. MCPS 는 서비스 동물을 돌보거나 감독할 책임이 없습니다.

C. 소형/미니어처 말(Miniature Horses)

1. 소형/미니어처 말을 서비스 동물로 특정 시설에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a) 미니어처 말의 유형, 크기, 무게 및 시설이 이러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b) 취급자가 소형 말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c) 소형 말이 실내에서의 대소변 훈련이 되었는지,
 - d) 특정 시설에 소형 말의 존재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적법한 안전요건을 훼손하는지 여부
2. 이 규정의 항목 I부터 항목 IV까지는 소형 말에도 적용됩니다.

D. 직원 또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동물을 위한 대응

1.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는 ADA 조정에 따라 서비스 동물이 필요한 MCPS 직원의 리소스이며 필요에 따라 직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동물 대응을 위해 직원과 학교를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2. Office of Special Education(OSE)은 ADA 조정에 따라 서비스 동물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를 위한 리소스이며, 학부모/보호자, 학생 및 학교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동물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OSE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은 학교 행정관리가 학생을 위한 서비스 동물에 관한 질문을 지원합니다.
3. 서비스 동물을 이용하는 직원, 적격 학생, 서비스 동물을 이용하는 장애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학교에서의 서비스 동물 대응을 위해 학교 직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요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의 예입니다:
 - a) 서비스 동물을 위한 휴식 공간 및 휴식 시간
 - b) 서비스 동물이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하루 중 적절한 장소와 시간
 - c) 필요에 따라 서비스 동물에 대한 직원과 학생을 위한 정보
 - d) 필요에 따라 응급 절차의 명확성
4. 서비스 동물의 도움을 받는 장애가 있는 개인, 직원 또는 장애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서비스 동물이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장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E. 책임과 관리

1. 서비스 동물 소유자/주인은 동물로 인해 다른 학생, 직원, 방문객 및/또는 재산에 발생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서비스 동물이 있는 학생은 자신의 동물을 돌보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서비스 동물을 돌보거나 감독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이나 장애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동물을 돌보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비스 동물의 보호 및 감독과 관련된 문제는 건축물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사안별로 처리하게 됩니다.

F. 서비스 동물의 철수 또는 배제

학교 관리자는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있는 개인 또는 장애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MCPS 소유지에서 서비스 동물을 철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동물이 통제 불능 상태이고 동물의 취급자가 효과적인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 동물이 대소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동물 취급자가 서비스 동물이 스스로 대소변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나 시간을 무시할 경우
3. 동물의 존재가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경우
4. 동물이 적절히 배제된 경우, MCPS 는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 동물을 교내에 두지 않고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G. 훈련 중인 서비스 동물

1. MCPS 는 아래에 명시된 조건하에 서비스견이 MCPS 수유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훈련은 학교의 교육 과정을 방해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은 일반적으로 교실에서의 교습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훈련 중인 서비스견은 각 학교에 언제든지 한 마리 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훈련 중인 서비스견 소유 기관은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a) 예방 접종 서류, 배상 책임 보험 증명 서류 및 강아지의 배변 훈련이 최소 6개월 이상을 보장

- b) 위의 섹션 IV.D.3 에 자세히 설명된 배정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강아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합니다.
 - c) MCPS 시설에 있는 동안 서비스견은 훈련 중인 서비스견임을 식별할 수 있는 하네스, 조끼 또는 기타 적절한 장비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4. 위의 항목 IV.F.에 명시된 바에 따라 훈련 중인 서비스견은 MCPS 소유지에의 접근을 거부될 수 있습니다.
 - 5. 학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MCPS 는 MCPS 학교와 관련된 업무나 활동을 위하여 세 유닛의 서비스견팀에 소속되어 학교 소유지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의 트레이너의 학교 출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 (ADAAA);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8, §35.104, §35.130(b)(7), and §35.136.

규정 변경사: 신규 규정 2013년 7월 24일, 2014년 5월 16일 개정; 2024년 1월 26일 개정.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Office of Well-being, Learning, and Achievement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5630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